

· 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 사용

지방재정법 제47조,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
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 사용한 것은

- | |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 예산이용(| 0 건) | 0 원 |
| 2. 예산전용(| 15 건) | 1,206,382,000 원 |
| 3. 예산이체(| 251 건) | 110,593,956,000 원이며 |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